

전자책에서 폰트 파일 저작권 문제에 대하여

About font file copyright issues in a e-book

이 문 영, 김 인 철

상명대학교 문화기술대학원 창의콘텐츠학과

Lee Moon-young, Kim Incheul

Dept. of Creativity Contents, GSCT, Sangmyung University

요약

글자체(폰트)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지만 글자(폰트)프로그램은 저작권법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규정에 따라 저작물로 보호된다. 저작권법이 글자체 그 자체는 보호하지 않지만,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보호하는 양극간의 괴리 때문에 폰트 제작 회사가 무리한 법적용을 폰트 사용 편집회사들에게 주장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위반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한 뒤, 폰트 제작 회사의 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 문제점을 밝혀보기로 한다.

I. 서론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글을 쓸 때 나타나는 글자체는 제작자가 노동을 투입하여 제작한 것들이다. 따라서 이 글자의 모양, 즉 글자체를 만든 사람(또는 기업)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의 모양은 조선시대 세종에 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모양 자체에는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당연한 이야기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컴퓨터의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글자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서 보호되지만 글자체, 즉 폰트 자체는 보호되지 않는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폰트 제작 회사들 중에는 폰트와 폰트 프로그램 간의 개념차이를 이해하지 못하여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본고에서 다뤄보고자 한다.

II. 폰트와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 문제

1. 폰트 제작회사의 주장

폰트 제작회사는 출판사에게 보낸 공문에서 전자책 표지에 사용된 글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고, 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신들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편의상 출판사는 A, 폰트 제작회사는 B로 명기하기로 한다. B의 주장 내용 네 가지를 인용하여 본다.

① A사가 웹에 게시하여 사용 중인 e-book pdf(또는 e-pub)에 B사의 폰트가 글립데이터 형태로 탑재되어 해당 글자를 확대 및 축소하여도 글자가 깨지지 않고,

페이지를 인식하도록 색인 기능을 지원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므로 이를 웹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시켜 활용하는 것은 - 사용제한의 범위를 넘어 저작권사 고유의 라이선스 운영방침에 위반되므로 이를 적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용권을 취득한 후 사용해야 됨을 알려 드립니다.

② 외주업체 의뢰 시에 폰트 보유 확인이 안 될 시에는 제작 과정 중 폰트 프로그램이 불법적으로 사용됐다고 간주할 수 있으며 그 증거자료인 결과물은 폰트 파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명백한 증거물이 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물은 범죄 행위의 결과물인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폰트에 대한 저작권사의 별도의 사용권 계약은 “[저작권법 제46조 참조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관한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 관해서 규정]”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한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에서도 사용권 계약서상 또는 이용약관 등에 특정 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고지되어 있을 경우 관리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부록) 폰트파일 저작권 개념 7-2 참조]

④ 당사는 귀사의 저작권 침해 혹은 라이선스 위반사용에 대하여 소송(민·형사 법적처리)을 제기하기에 앞서, 라이선스를 취득하신 후 사용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오니, (중략) 연락이 없을 경우 당사는 귀사에서 협의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즉시 거래하고 게시는 대형서점(인터넷서점) 및 유통회사에 저작물 사용 중지 신청 및 법무법인에 소송의뢰를 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사실 관계가 잘못된 것이다.

2. 폰트 제작회사의 주장 검토

폰트(글자체)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폰트 그 자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디자인보호법 제94조 2항 1호에서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또한 대법원 관례(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에서도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작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서예 작품처럼 글자를 이용한 예술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는 뜻이다.

폰트 제작회사의 권리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법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민법 등이다. 이중 가장 주된 법은 디자인보호법이다. 여기서 보호하는 것은 폰트의 디자인 권리에 대한 것이며 그 사용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일단 판매한 폰트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이 소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

B사의 주장인 ①은 사실 관계 자체가 잘못 되었다. B사는 A사의 전자책 표지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했으나 전자책의 표지는 이미지 파일로 폰트 파일이 내장될 수가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사는 확대 축소할 경우 글자가 깨지지 않는다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PDF 포맷의 전자책 파일에는 폰트가 내장될 수 있으므로 - 이 경우에는 폰트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으므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비트맵 폰트는 이미지이므로 저작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저작권은 유포션 폰트(위 주장에 따른 해당 글자를 축소 확대해도 글자 형태가 깨지지 않는 폰트 파일)가 내장되었을 때만 해당한다.[3]

B사의 주장 ②에서는 A사가 외주 작업으로 완성한 표지의 경우에도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에 분명히 명시된 바와 같이 폰트 파일을 이용에 따른 결과물에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3]

B사는 주장 ③에서 사용약관의 특수한 이용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역시 잘못된 주장이다. 해당 내용은 어디까지나 폰트 파일에 대한 것으로 폰트 파일의 사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A사는 폰트 파일을 사용해서 이미 만들어진 이미지

파일을 웹상에 업로드한 것으로, 이미지 파일 안에는 폰트 파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물은 복제·전송한다고 하여도 저작권 위반의 해당 사항이 없다. B사는 전자책이라는 용어에 의해서 디지털 파일의 속성에 대해서 A사가 무지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A사를 기망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B사의 주장 ④ 역시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제의 소지가 있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권 침해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사의 거래처에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하는 것은 A사의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런 행위가 실제로 일어난다면 오히려 B사가 A사에게 손해배상의 질 수도 있다.(대전지법 2009.12.4, 선고, 2008가합7844)

III. 결론

폰트에 대한 저작권 행사의 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201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폰트 저작권 관련 상담이 총 3천867건 접수되었을 정도이다. 폰트 제작회사들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정리된 논문도 존재하며[5] B사의 사례는 전자책이라는 컴퓨터 파일을 빙자한 요구로 기존 사례와는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폰트와 폰트 프로그램을 구분하는 일이 일반인들에게 어렵다는 맹점을 폰트 제작회사들이 노리고 있는 셈이다. 폰트 제작은 간단하거나 쉬운 일은 아니다. 한글을 잘 표현하고 아름답게 나타내는 일에 대하여 정당한 보수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불법 복제가 난무하여 폰트 제작회사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불법행위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폰트 제작회사가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지켜나가고자 함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저작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나타나야지 무지한 출판사에 대한 기망행위로 나타나서는 안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

- [1] 박준석 “콘텐츠 산업에서의 저작권 - 최근 1년간의 관련 판례들을 중심으로”, 창작과 권리 제67호, pp110-173, 2012.
- [2] 이상정, “우리나라에서 글자체의 보호에 관한 소고” 계간 저작권 101호, pp. 1-29, 2013.
- [3] 김도현, GPL 폰트를 내장한 PDF 전자문서의 저작권, 비교법연구 제6권 1호, pp.42-48, 2005.
- [4]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p.5, 2013.
- [5] 최자유·한희정, 폰트 저작권 행사의 남용에 대한 법적 문제점 및 대안,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제7권 제1호, pp.25-58, 2016.